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본사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율 차등화〉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02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본사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율 차등화(허성무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24.

다. 회 부 일 : 2026.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기업의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제1호).

Ⅲ. 검토의견

1. 본사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율 차등화(허성무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법인세율(제55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적용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																				
☐ 일반 법인	☐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10%</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0%</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25%</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7%</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7%</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19%</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22%</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9%	3천억원 초과	22%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7%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9%																				
3천억원 초과	22%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td>20%</td></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 <tr> <td>3천억원 초과</td><td>25%</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허성무의원안 2026. 2. 24. 발의(의안번호 17002)

☐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본

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3%p 인하하려는 것임.

□ 2014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순이동자 수¹⁾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 음(-)의 값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계속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2015~2025)]

(단위: 천 명)

권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도권	-33	-1	16	60	83	88	56	37	47	45	38
중부권	49	41	42	28	11	12	24	34	18	16	20
호남권	-8	-16	-18	-28	-25	-24	-16	-13	-15	-18	-16
영남권	-22	-40	-54	-69	-71	-78	-67	-61	-47	-40	-39

주)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중부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 영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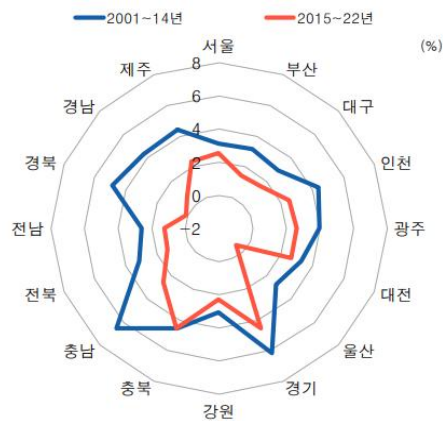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지역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²⁾ 지역내총생산(GRDP)을 2001년~2014년(전국 평균 4.2%)과 2015~2022년(전국 평균 2.5%) 두 기간으로 나누어 비교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3.1% → 2.5%)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1) 순이동자수는 대한민국 국민 중 국내의 일정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국내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집계한 것으로 읍면동의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는 통계로,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값으로 계산함. 순이동자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이며 순 인구유입을 의미하고, 순이동자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경우로 순 인구유출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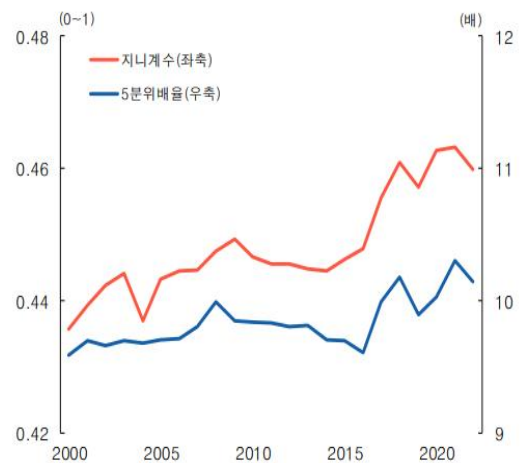
2) 한국은행,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2024.3.

경기(6.1% → 4.5%) 및 충북(4.5% → 4.5%) 지역은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소폭 하락하는데 그친 반면, 울산(2.8% → -0.6%), 충남(6.6% → 2.7%), 경북(4.8% → 0.1%), 경남(4.3% → 0.6%) 등 비수도권의 제조업 특화 지역들은 3%p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지역 간 성장률 격차는 2015년 이후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음.

[연평균 GRDP 성장률]



[지역간 GRDP 불균형]³⁾



자료: 한국은행,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2024.3.

이와 더불어 수도권의 자본(자산)스톡 집중현상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이 국가 전체 자본스톡의 46%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면적 1km² 당 자본스톡이 2,434억원인데 비해 그 외 지역은 383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1인당 인프라

3) 지니계수: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이 심함

5분위배율(배): 상위 20%지역(16개 지자체중 1~3위)의 평균 생산액/하위 20%지역(14~16위)의 평균 생산액

규모도 비수도권 대도시⁴⁾는 2,400만원으로 수도권 대도시(2,700만원)에 비해 낮음 수준임.⁵⁾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개정안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거나 지방에서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음.

「202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잠정)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중 48.8%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종사자수는 수도권이 51.8%를 차지했음.⁶⁾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으며,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46.8%에 해당되었음.

이와 같이 지역 간 청년 취업자 비중의 갭이 확대된 것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특히 경기도와 충청 지역으로 청년들이 이동한 것에 기인함.

또한, 2013년 월평균상대임금 상위 20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비수도권이었으나, 2024년에 6곳으로 감소했음. 2023년에는 세종시를

4) 수도권 대도시는 서울, 인천이며 그 외 지역 대도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을 의미함.

5)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2024.6.19

6) 통계청,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5. 9. 23.

제외하면 상위 10곳에 비수도권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상위 20권으로 넓히더라도 충청권 이외 지역에서는 울산(13위), 광양시(14위) 등이 순위가 대폭 하락하여 포함되었음.⁷⁾

이처럼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의 주요 원인인데, 만약 개정안과 같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지방에서 기업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운영할 유인을 제공하면, 기업이 지방으로 기업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참고로, 이스라엘은 낙후지역의 산업고용 증대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⁸⁾

[이스라엘 법인세율]

(단위: %)

연도	Priority Area A (낙후지역)	Priority Area B
2011년~2012년	10	15
2013년	7	12.5
2014년~2016년	9	16
2017년 이후	7.5	high tech: 6~16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2020.11.

둘째, 개정안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기업에서 근무하는

7) 한국고용정보원,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2025. 5.

8) 이스라엘은 전국을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투자유치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법인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방안', 2020.11.)

직원들이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으로 기업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당초 해당 기업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 중 일부는 새로운 기업 소재지로 이사할 것으로 보임.

특히, 가족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방의 정주 인구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셋째,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지방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라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은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늘려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직원 고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기업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결과, 유효법인세율은 유형자산증가율을 통하여 종업원수 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⁹⁾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이 본사 등을 이전하기 위한 의사결정에는 지역 인프라, 기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¹⁰⁾ 지역간 법인세율을 차등

9) 김동훈, 법인세가 기업투자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2015. 8월

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둘째, 법인세는 국세로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경계에 있는 수도권 밖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¹¹⁾

셋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의 조세감면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1조)¹²⁾,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3조의 2)¹³⁾ 등의 규정을 두어 법인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창업중

10)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인재확보, 교통인프라, 지가, 유사·동종 기업의 집적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언급하고 있음(Wagner, L. 2016. 「Why Corporate Headquarters Relocate」, Trade & Industry Development(2016. 3. 10.)

<https://www.tradeandindustrydev.com/industry/why-corporate-headquarters-relocate-11394>

11)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취지는 국가의 균형발전 및 수도권지역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세는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인세 세수 감소 우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기업 설립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한 바 있음(“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 논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V, 2023.7.31., 238-240면)).

1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함.

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¹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¹⁵⁾ 등의 규정을 통해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는 것보다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적일 수 있도록 법인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넷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재정수입이 연평균 3조 4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함.¹⁶⁾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개정안	△2,665	△34,924	△36,530	△38,211	△39,968	△152,298	△30,460

주)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5

13) 이전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함

14)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고,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75%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50% 세액감면이 적용되고,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25% 세액감면이 적용됨.

1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최대 3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16)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는 국세이므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은 지원 필요성이 낮은 업종까지 세제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효과는 없이 세수 감소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 이전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